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08. 3. 1. 개정 2012. 7. 16.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6. 23. 개정 2016. 1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세계 명문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분야로의 계속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과정은 “대경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하 “본 과정”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위치) 본 과정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복1길 65”에 둔다.

제5조(설치 학과의 입학정원)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학사학위과정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본 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2에 의하여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본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 위원회는 총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전체 위원 중 산업체 인사, 외부 인사 등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본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 기본 계획(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5. 전공심화과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학기) 학기는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5월22일)

②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과별 심화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주말(토,일요일)에 수업을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입 학

제14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 일부터 4주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15조(입학자격)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과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으로 나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①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의 경우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또는 9개월(전년도 졸업자)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16.6.23.>

②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할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신설 2016.6.23.>

제16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발방법 중에서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서류전형
2. 면접고사
3. 실기고사
4. 적성검사
5. 신체검사

제18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하여 납부연기, 분할 및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기타 입학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0조(재입학) ① 본 과정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 70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② 자퇴 및 제적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과의 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재 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④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되기 전 1년제 수업연한의 학과가 2년제 학과로 전환된 경우 재입학자는 2년제 수업연한을 따른다.

⑤ 재입학자의 자퇴 또는 퇴학시의 학과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는 학과는 개설 학과 중 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 전공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 6 장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전과)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으나, 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 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하다.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3.>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6.12.23.>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 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육아휴학 :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4. 창업휴학 :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학생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3.>

④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질병(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천재지변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⑥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⑧ 제 3항 제 2호에 의한 휴학사유 중 가사사정에 의한 휴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에는 불허한다.

제23조(휴학절차) 본교 학칙에 따른다.

제24조(복학) ① 제22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3.1.>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할 때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6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3.1.>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2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 선택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나누며 총장이 정한다.

제28조(교과의 이수범위)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9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학점 인정)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양학점 및 전공학점 중 80학점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제3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강신청 학점) 신청학점은 매 학기 10학점이상 24학점 이내로 한다. 단, 졸업유급 등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10학점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성적포기) ① 기 취득한 학점 및 당해 학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포기는 별도의 공고기간에 할 수 있다.

② 포기한 학점은 취소 할 수 없다.

제34조(강의시간표) ① 강의시간표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각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거, 개설할 교과목을 설정하고 교수별 교과시간 배정표를 작성하여 교

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7.1., 2014.3.1.>

2. 각 학과에서 제출한 교수별 교과시간 배당표를 교학처에서 종합 조정하고 총장의 허락을 얻은 후 강의시간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3.7.1., 2014.3.1.>

3. 시간표 작성 시 교수 개인별로 연속강의는 이론과목은 3시간, 실험실습과목은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작성된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하고 수강신청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시간표는 교학처장의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3.7.1., 2014.3.1.>

제35조(출석부작성 및 보관)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출결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성적입력 시 환산하여 전산입력 후 출석 및 성적확인표를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1년간 보관한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6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 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과목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60점)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
S / U		불계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연수, 자기개발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는 S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 표기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②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인 경우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평소의 실제성적(평가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군입대자 및 휴학자 성적처리) ① 당해 학기 중간고사 실시 후 군 입대 휴학자로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조기사험 또는 기말고사에 응시를 못 한 자의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치하여 평가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휴학자는 취득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가 경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업일수가 3/4 이 지났다 하더라도 학생이 휴학하면 일반휴학의 경우는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수강신청을 중복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한 성적

제41조(졸업)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부)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졸업여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서식 제 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전문학사과정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탈락된 자로서 다음 한 학기를 이수하여 전항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을 경우 후기졸업 사정회의에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위수여) 본 과정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서식 제 1호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①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7.1., 2015.8.31.>

학과 및 전공별 학위명

학 과	전 공	학위명	전공명
경호행정학과		경호학사	경호학전공
관광호텔학과		관광학사	관광호텔학전공
모델학과		예술학사	모델학전공
뷰티디자인학과		뷰티예술학사	뷰티디자인학전공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전공
푸드아트학과	호텔조리전공	호텔조리학사	호텔조리전공
	호텔제과제빵전공		호텔제과제빵전공

제 호

학 위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학위를 수여함.

소정의
학사 학위를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 ○ ○

학위번호 : 대경학사-○○○○○-○○○○○